

의안번호	제533호
의결 연월일	2013년 9월 일 (제323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8월 26일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기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3
----------	-----

발의연월일 : 2013년 8월 26일

발 의 자 : 심기보, 김희수, 김봉희,
김형근, 임 현, 정지숙,
김영주 의원 (7명)

1. 제정이유

NGO센터의 공익성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협력과 지지를 포함하여 NGO와 사회적경제 영역이 NGO센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NGO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함.

NGO의 정의에 사회적 경제 영역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NGO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 공익 추구 → 사회적 목적 추구

나. 기능 확대(안 제4조제6호)

-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사회적목적(공공성, 공익성)실현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사회적목적(공공성, 공익성) 실현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